

부서별 검토결과

● 관광과(☎640-5422)

-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의 소금강온천은 1996.2.29. 온천발견신고 지역으로 온천법에 따라 발견신고 이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등의 후속 행정절차 진행 후 온천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후속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 사업추진 및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미개발 온천입니다.
- 또한 2006년 온천법 전면개정으로 온천우선이용권자라는 조항이 신설되어 온천발견신고는 토지소유자만 할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소금강 온천처럼 발견신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온천발견신고 취소는 발견신고자를 통하여 취소하도록 법령 검토를 마쳤으나 온천개발을 추진할 경우 추진 주체에 대하여는 온천법의 경과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 2006년 온천법 전면개정으로 발견신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온천개발 사업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 이후 발견신고자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진 또는 온천발견신고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더불어 현재 강릉시에서는 소금강온천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

● 도시과(☎640-5365)

- '연곡면 송림리 804-1' 필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 면적 60㎡이상 분할가능합니다.
- 또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제4항에 따라 2006년 3월 8일 이전에 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 제2호(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택지식, 격자식 분할은 불가합니다.

-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공유 지분의 경우, 공유자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끝.

● 지적과(☎640-5097)

-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804-1의 분할신청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 분할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 이동신청(분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